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6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유만희,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철성, 유정인, 장태용,
허 훈, 홍국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었음. 이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용어로 대체 사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하여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례명 또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함.

- 나.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신설)
- 라.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 마.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15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시설폐소”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으로, “주거공간”을 “주택”으로 한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폐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제5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사회 전환”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2. (생 략)</p> <p>3.·4.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5.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된 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p>	<p><u>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p> <p>7.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 -----</p>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
을 말한다.

7.·8. (생략)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
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 3. (생략)

<신설>

4. ~ 6. (생략)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신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5조(시설폐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
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 주택-----
-----.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4조(지원) -----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거주시설 폐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
주시설 폐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야 한다.

제5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
주시설에서 폐소하여 자립을 희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
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
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
영한다.

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
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
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
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
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삭 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제4조(지원)제4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과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각 호의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확인결과 기시행¹⁾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장애인지원주택 운영(2024년도 예산 8,385,121천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2024년도 예산 4,250,178천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2024년도 예산 709,398천원) 등 기시행사업